

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업기술원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12일, 이충원 의원 외 16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
(2024년 4월 23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충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에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품종, 재배, 기술 연구 및 재배 농가 교육,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·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

-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3조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·재배 현황,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 및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,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

규정한 것으로, 농촌 현실을 감안한 전문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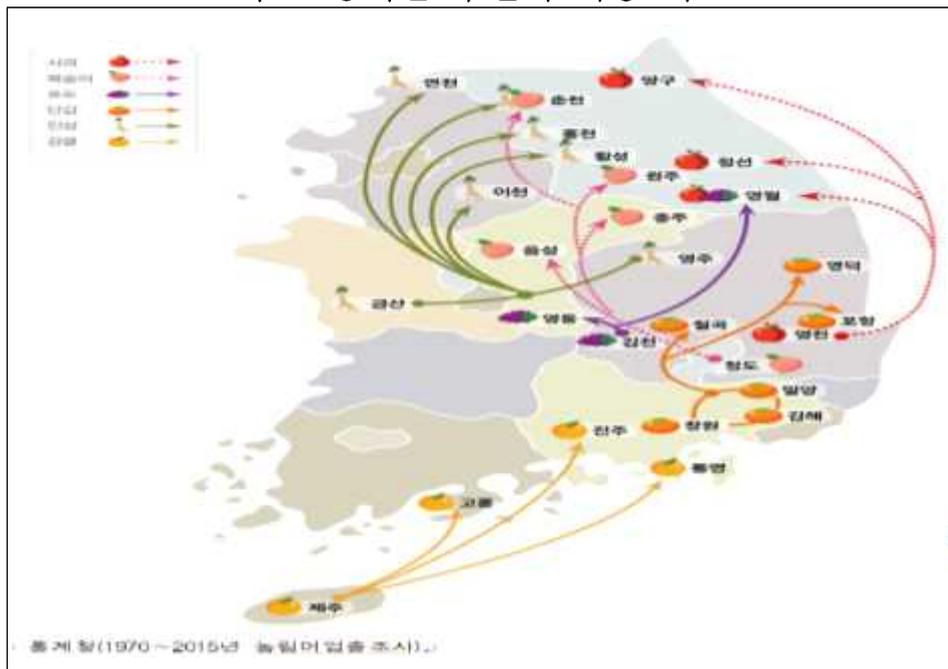
- 안 제6조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술, 연구 및 농가 교육, 컨설팅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, 새로운 작물의 연구·재배 및 선제적인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- 안 제7조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, 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시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8조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 및 관련 지식·기술 등의 보급·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한 것으로, 새로운 작물의 원활한 재배·육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.
- 안 제9조는 공공기관 등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 확대 및 우선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10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 조례의 적용 사항을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,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-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해가 거듭될수록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전년 대비 0.8도 상승한 13.7도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으며, 향후에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폭우와 폭염을 비롯하여 이상기후, 기상이변 발생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.
-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로,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주요 농작물 재배지역이 점점 북상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도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,
- 우리나라도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어 도내 농가에서도 아열대 과수 및 채소 재배가 가능해졌으며, 실제 재배 농가도 늘어나고 있음.

<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지도>



- 국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,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,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.

- 이에, 지구 온난화, 아열대 기후 확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역 및 작물의 생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아울러,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여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「없음」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